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8. 23 선고 2020가단16300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4. 4 선고 2023나39206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8. 23 선고 2020가단16300 판결

전문

원 고 A 협동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현영

변론종결 2023. 6. 21.

판결선고 2023. 8. 23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1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29.부터 2023. 8. 23.까지는 연 6%, 2023. 8. 24.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5%는 원고, 5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3,20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9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계란의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, 피고는 'D'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하는 사람이다.

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았다.

나. 원고는 별지 첫 번째 표 중 비고란에 '계좌이체'라고 표시된 각 돈을 해당 날짜에 피고에게 송금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두 번째 표 각 일자 무렵에 계란 각 5,040판(총 40,320판)을 납품받았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2, 3, 을 1의 1내지 8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(1) 별지 첫 번째 표 기재와 같이, 원고는 2018. 3. 5.부터 2017. 1. 23.까지 총 79,140,6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(2017년 1월 정산 누락분 포함)1), 피고로부터 2018. 4. 26.부터 2018. 6. 8.까지 총 56,325,6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2,815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(2)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아 다시 주식회사 E에 납품한 계란 중 부패한 계란이 발견되어 2016.

9. 30.경 10,176,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.

(3)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계란의 포장에 필요한 난좌 210,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, 그 대금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.

(4)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,201,000원(= 22,815,000원 + 10,176,000원 + 210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(1) 증인 G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, ① 거래방식이 원고의 주장과 같았다는 점과 그에 따라 원고가 과다 지급한 대금이 22,815,000원에 이른다는 점, ② 피고가 공급한 계란 중 부패한 계란이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10,176,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(2) 다만 원고 주장의 위 난좌 대금 210,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한편 피고는,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계란 대금이 위 210,000원을 상회하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상계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판사 임기환

<아 래>

	일 자	금 액	비 고
1	2018.03.05	15,140,600원	정산이월
2	2018.04.26	6,000,000원	계좌이체
3	2018.05.08	2,000,000원	현금지급
4	2018.05.09	4,500,000원	계좌이체
5	2018.05.11	6,000,000원	계좌이체
6	2018.05.16	6,000,000원	계좌이체
7	2018.05.18	5,500,000원	계좌이체
8	2018.05.19	2,000,000원	현금지급
9	2018.05.24	6,000,000원	계좌이체
10	2018.06.01	6,000,000원	계좌이체
11	2018.06.11	5,000,000원	계좌이체
12	2017.01.23	15,000,000원	2017년 1월 정산누락분
합 계		79,140,600원	

원고가 2018. 3. 5. 정산 이후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후 피고는 2018. 6. 8. 까지 계란을 공급하였고,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계란의 내역과 가액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(갑 제1호증 거래내역서).



<아 래>

	일 자	수 량	가 액
1	2018.04.26	5,040판	6,048,000원
2	2018.05.07	5,040판	6,940,800원
3	2018.05.10	5,040판	7,070,400원
4	2018.05.15	5,040판	7,444,800원
5	2018.05.18	5,040판	7,005,600원
6	2018.05.22	5,040판	6,955,200원
7	2018.05.30	5,040판	7,812,000원
8	2018.06.08	5,040판	7,048,800원
합 계		40,320판	56,325,600원

1) 원고는, 이른바 ‘후장기 거래방식(사단법인 F에서 계란 시세정보를 고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란을 먼저 공급받고 그 이후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조정가격으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방식)’으로 피고와 거래하였고, 원고가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후 단가를 정하여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.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‘공급 당시의 시세에 따라 계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’라고 주장하고 있다.